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카드사가 동일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A사와 신용카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위해 A사의 업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
	○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각사의 DMZ 구간을 경유하는 대외망 통신 대신 방화벽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번호(port)와 기능만을 이용하여 직접 통신하는 것이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상의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
판단	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해야 하고, ○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.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)
	□ 다만, 망분리 적용예외 규정에 의해 카드사가 동일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A사에 신용카드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,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2항제2호 다목)
	○ 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사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1항)
	○ 망분리 적용예외시 구체적인 망간 접속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,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및 제반 절차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3항)를 모두 준수해야 하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